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733 발의연월일: 2025. 3. 7.

발 의 자:이광희·박해철·이재관

이기헌 • 박지원 • 강준현

김문수 • 박선원 • 윤건영

허성무 · 채현일 · 서미화

김승원 • 민병덕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도입 이후 남성근로자의 가족 및 자녀 돌봄 권리를 강화하며 출산휴가 조건을 청구에서 통지로 전환하며 저 출생 시대에 대응하고 있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는 배우자의 범위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 등 배우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신청서를 받고 반응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음.

이에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의 배우자 범위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사용 신청을 받은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 용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및 제19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배우자"를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9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 |
| 사업주는 근로자가 <u>배우자</u> 의 | <u>배우자(사실</u> |
|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 | <u>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u> |
| 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 | <u> 함한다)</u> |
| 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 |
|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 |
|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 |
| | |
| |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제19조(육아휴직) ① ~ ⑤ (생 | 제19조(육아휴직) ① ~ ⑤ (현행 |
| 략) | 과 같음) |
| <u><신 설></u> | ⑥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신 |
| | 청을 받은 사업주가 신청을 받 |
| | 은 날로부터 고용노동부령으로 |
| | 정하는 기한 내에 육아휴직을 |
| | 허용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 |
| | 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 |
| | <u>으로 본다.</u> |
| <u>⑥</u> (생 략) | <u>⑦</u> (현행 제6항과 같음) |